

#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49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8. .  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# 제안이유

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

### 주요내용

- 상위법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. (안 제3조 ~ 제6조)
- 효율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명단 공개 및 제척·기피·회피 내용을 신설함.(안 제8조의2 ~ 제8조의3)
-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한 개인·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.(안 제16조의2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【붙임 4】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4. 6. 28. ~ 2024. 7. 18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[붙임 5]

○ 방침결정문 : [붙임 6]

**[붙임 1]**

**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7호 중 “시장 및 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2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5호를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41조제4항”을 “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”을 “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촉직 위원장이”를 “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30명이하”를 “20명 이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주민센터”를 “행정복지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주민자치위원”을 “주민자치회 위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위원의 공개) 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

제8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

-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 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항에서 같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 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4조 제목 “(의견의 청취)” 를 “(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경우 법 제11조에 따라” 를 “경우” 로, “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” 를 “등에게” 로 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포상) 시장은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이 경 숙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지역복지팀장 박 하 연
	담 당 자 성명·전화	배 은 형 (행정 3417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라 <u>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<u>지역사회보장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</u>----- -----.</p>
<p>제2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~ ② (생략)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그 밖에 <u>시장 및 위원장이</u> 지역 사회보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2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위원장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구성 등)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2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「<u>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</u>」 (이하 “<u>법</u>” 이라 한다) 제44조에 따른 <u>복지위원</u>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&lt;삭제&gt;</p>

6. (생략)

③ ~ ④ (생략)

제4조(실무협의체)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사회복지·보건 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업무 담당팀장,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1. (생략)

2. 제6조에 따른 동 협의체 위원장

3. ~ 5. (생략)

⑤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6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실무협의체) ①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4항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-----.

④ -----  
-----  
-----공동위원장이  
성별을 고려하여-----  
-----  
-----.

1. (생략)

2. <삭제>

3. ~ 5. (생략)

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.

제5조(실무분과) ① (생략)

②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6조(동 협의체) ① 동 지역의 위기 가정,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·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.

② (생략)

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

5. 동장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
6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제5조(실무분과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20명 이하 -----  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동 협의체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행정복지센터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<삭제>

5. -- 주민자치회 위원 -----  
-----

6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<신설>

제8조의2(위원의 공개) 각 협의체의  
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 
위원의 명단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  
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

<신설>

제8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 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 
협의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  
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 
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  
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 
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  
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  
자인 경우
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  
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 
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  
하 이 항에서 같다), 감정 또는 조  
사를 한 경우
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 
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 
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  
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 
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 
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 
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 
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 
없다.

제14조(의견의 청취)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(이하 “관계인 등”이라 한다)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신설>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4조(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) --  
 -----경우  
 -----  
 -----등에게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제16조의2(포상) 시장은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안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-494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4년 9월 2일

제안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# □ 수정이유

- 안산시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와 불부합한 내용을 삭제하고,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조문 일부를 수정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(안 제3조제1항) “구성하되” 를 “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” 으로 함.
- (안 제5조제2항) “분과장” 을 “분야별로 분과장” 으로 함.
- (안 제8조의2) 위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
- (안 제8조의3)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.

# 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구성하되” 를 “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은” 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분과장” 을 “분야별로 분과장” 으로 한다.

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구성 등) ① 대표 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20명 이상 30명 이하</u>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<u>구성</u>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구성</u> 하되, 위촉직 위원은 ----- -----</p>
<p>제5조(실무분과) ① (생략)</p> <p>② 실무분과는 <u>분과장</u> 1명을 포함하여 <u>30명 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5조(실무분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20명 이하 ----- --.</p>	<p>제5조(실무분과)</p> <p>② --- <u>분야별로 분과장</u> ----- --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8조의2(위원의 공개) <u>각 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제8조의3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<u>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<u>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</u></p> <p>1. <u>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u></p> <p>2. <u>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</p> <p>3. <u>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</u></p> <p>4. <u>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</u></p>	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<u>이었던 경우</u></p> <p>② <u>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</u></p> <p>③ <u>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</u></p>	